

2022/7/26

수 신: 주식회사 SNK의 KDR 소유자님

발신인: Electronic Gaming Development Company  
7605, Abdullah Al Sahmi St, 3044, Assafarat Dist, Riyadh, Kingdom of Saudi Arabia  
General Manager Abdullah Abdulrahman Alayadhi

제 목: 주식등매도청구권 행사 관련 납세의무 안내

당사가 2022년 6월 24일에 공고 및 통지한 바와 같이, 당사는 2022년 7월 27일자로 주식회사 SNK (이하 “회사”)의 보통주식 202,566 주 (발행주식총수의 96.18%)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로서 일본 회사법 제 17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등매도청구권을 행사(이하 “본 매도청구”)하여 발신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발행주식총수의 3.82% 상당, 이하 “본건 주식”)에 대하여 1KDR 당 37,197 원으로 계산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본건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본 매도청구가 진행되어 KDR 소유자들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매각대금을 지급받을 때의 세금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본건과 같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한국 코스닥시장에 KDR로 상장되었다가 폐지된 이후, 해당 외국법인의 대주주인 다른 외국법인이 설립지법인 일본법에 따라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거래에서의 소득세,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및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회사는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현재까지 국세청으로부터 한국 세법상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KDR 소유자의 소득세, 법인세 납부의무에 대한 회신 1건을 받았을 뿐 (i)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KDR 소유자의 증권거래세, (ii)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증권거래세 납부와 관련한 답변은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본 매도청구로 인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의무의 해석에 있어, 기존 해석사례(사전답변 법규국조 2014-498, 2014. 11. 28.)을 참고하라고 답변하였습니다(서면-2022-국제세원-1257, 2022. 04. 25).
  -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언급한 기존 해석사례는 한국에 KDR을 상장한 일본회사인 SBI 모기지(주)가 일본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임의로 잔여지분을 매수하고, 매각대금은 양수법인이 원주의 예탁기관인 KSD에게 지급하고 KSD는 증권회사 또는 은행에 지급하여 증권회사와 은행이 최종적으로 KDR 소유자들에게 매각대금을 지급한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으로, 해당 거래에서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는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증권회사 또는 은행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위 SBI 모기지(주) 거래에서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유권해석도 존재하는바(법규부가 2014-557, 2015. 1. 28. 질의회신문), 해당 유권해석에서 국세청은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상장된 주식예탁증서를 보유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상장폐지 절차에 따른 임의매각 형태로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를 증권회사나 은행 등 보관기관을 통해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권등의 양수인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2. 이에 당사는 KDR 소유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당사가 받은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 1건의 내용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나, 추후 국세청의 답변에 따라 세금 납부 여부 및 납부의무자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KDR 소유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본문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KDR 소유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및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는 KDR 소유자가 KDR을 보관하고 있는 증권회사 또는 은행에 의하여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KDR 소유자가 ① 조세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자격이 있고, ② 그러한 면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조세협약에 따른 면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 실무적인 절차는 KDR 소유자가 KDR을 보관하고 있는 증권회사 또는 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매도청구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기한은 2023년 2월 28일이며 내국법인의 경우 KDR의 양도차익에 대해 본 매도청구가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당사에게는 납세의무에 대한 해석권한이 없으며, 위 안내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아 정리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추후 국세청이나 법원에서 위 안내와 달리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사는 각 KDR 소유자들의 납세의무 이행/ 불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하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추후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납세의무에 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통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신인 Electronic Gaming Development Company